

【 9 】 양주군청소년상담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년월일 2003년 월 일
제출자 양주군수

1. 요구이유

- 정원외 상근 비정규인력 충원 억제지침 준수 (민간위탁으로 해소)
- 지역청소년 상담사업 촉진을 위한 관련단체 참여
- 상담사업 수행능력 보유단체 위탁으로 운영의 효율성 확보

2. 주요골자

- 위탁시설 : 회천읍 덕정리 151-53번지 양주군청소년상담실
- 시설규모 : 건물면적 258㎡ (정보검색실, 상담실, 심리검사실 등 1식)
- 위탁사무 : 청소년상담실 운영 관리
- 위탁기간 : 체결일로부터 2년
- 위탁사업비: 112,702천원

(단위: 천원)

직영시		위탁시		비고
계	73,567	계	112,702	※참고
인건비	41,427	인건비	76,566 (유급상담실장인건비계상)	무급상담실장임명시 년 6,000천원
운영경비	31,740	운영경비	36,136	업무추진비 지급

- 상담실 인원 : 3명 (실장, 전임상담원, 행정원)
- 관리 및 운영방법 :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63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청소년상담실 운영·설치기준)에 의함
- 위탁조건 및 비용의 지급 : 양주군청소년상담실 위탁 협약(안)에 의함

붙임 : 양주군청소년상담실 운영 위탁협약서 (안) 1부.

양주군청소년상담실 운영위·수탁 협약서

본 협약서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지방청소년상담실), 동법시행령 제63조(지방청소년상담실의운영), 동법시행규칙 제34조(지방청소년상담실의설치)의 규정과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에 의한 "양주군청소년상담실"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자 양주군수(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수탁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이 설치한 양주군청소년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제반 운영업무를 "을"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지역 청소년 건전육성에 이바지하도록 하며 "을"은 이를 성실히 수탁관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약정한다.

제2조(위·수탁대상) 위탁(수탁)대상은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151-53번지 양주군 청소년상담실과 그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3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상담
- 2.청소년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 보급
- 3.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
- 4.상담실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5.청소년지도관련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지원

제4조(위·수탁기간 및 재협약) ① 본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②"을"은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이전에 재협약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은 관계서류 검토후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갑"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기본법 및 양주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갑"이 제시하는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갑"의 지시 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원활한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을"에게 위탁사업비를 지원하며 추가소요되는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직제 및 직무)** ① 상담실의 직제는 상근 상담실장 1명과 상담부 (전임상담원 1명, 행정원1명)로 한다.
- ② 상근 상담실장은 상담사업, 상담원 복무관리등 상담실 운영을 총괄 한다.
- ③ 상담부는 청소년관련 상담 및 관련프로그램운영 각종심리검사· 진단평가, 지역연대사업등과 상담실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예산의 편성)"을"은 청소년상담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등 소요 사업비를 산출하여 매년 9월말까지 다음연도 예산편성 계획서를 수립 하여 "갑"에게 제출여야 한다.

- 제8조(인사 및 복무감독)** ① 직원선발은 "을"이 선발하되 공개채용을 원칙 으로 하며 청소년기본법 관계규정 및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에 의한 적격 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 ② 직원의 결원 발생시에는 사전에 "갑"에게 보고하고, 1월 이내에 채용하여야 하며, 직원변동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을"의 복무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상담실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시정조치 및 상담실장 교체 요구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신분보장)** ① "을"은 직원의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 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 ② 이 협약 체결당시 "갑"이 채용한 직원은 "을"이 의무적으로 승계 한다.

제10조(위탁사업비의 지급) ① "갑"과 "을"의 위탁사업비는 금 원

(W _____) 으로 분기별 나누어 지급하며, 사용용도는 인건비·운영비·사업비등으로 매년 예산반영 결과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의 사업비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추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산 및 보고) ① "을"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분기별로(분기개시 5일까지)"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단, 협약체결 당해연도인 2003년도는 예외로 한다.)

② 사업비신청은 양주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갑"은 "을"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후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에 따라 "을"에게 사업 계획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을"은 분기종료후 익월5일까지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분기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 연도 종료후 익년도 1월 30일 까지 연간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갑"은 "을"에게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업무·회계감사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해지, 해약) ① "갑"은 "을"이 수탁관리자로서의 능력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될 때 또는 관계법규 및 "갑"의 명령, 지시를 현저히 위반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제1항에 해당될 경우 60일 이상의 시정 및 최고기간을 주어야 하며,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된 경우 이 사실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본 협약의 해지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질적인 해지 예정일 60일 이전에 사전 "갑"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갑"은 신청사유가 타당할 경우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④ 본 계약 해지시 "을"은 "갑"에게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관련한 위탁 사업비 잔액과 일체의 서류, 부책 및 물품·잡기등을 서면으로 인계하여

야 한다.

제12조(책임) ① "을"은 청소년상담실 관리운영자로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수탁업무과정에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의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갑"에게 전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이의사항의 조정) 본 협약서에서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일 및 협약서의 보관) ① 본 협약은 년 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약정事實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3년 월 일

위탁자(갑)

주 소 양주군 양주읍 남방리 1-1

성 명 양 주 군 수 임 충 빙 (인)

수탁자(을)

주 소

성 명

(인)